

검 토 보 고 서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안 건 명

가.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결산 승인안

나.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안건번호

의안번호 : 제25-48호, 제25-49호

3.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25년 5월 23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4. 회부일자

회부일자 : 2025년 5월 26일

5.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결산의 수행)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마.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I

복지동행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세입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
총 계	241,595,682,420	237,372,240,346	237,284,111,286	88,129,060	99.88
일 반 회 계	240,937,706,420	236,575,135,400	236,487,006,340	88,129,060	99.96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657,976,000	797,104,946	797,104,946	-	100

※ 수납률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2,409억 3,770만 6,420원)와 특별회계(6억 5,797만 6천원)를 합한 2,415억 9,568만 2,420원으로, 2,373억 7,224만 346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2,372억 8,411만 1,286원을 수납하고, 8,812만 9,060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률은 99.88% 임.

2

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합 계	314,564,628,420	296,438,188,503	3,860,177,200	4,155,791,995	10,110,470,722	94.23
일반회계	313,906,652,420	295,815,679,687	3,860,177,200	4,120,326,055	10,110,469,478	94.23
특별회계	657,976,000	622,508,816	-	35,465,940	1,244	94.6
의료급여 기금	657,976,000	622,508,816	-	35,465,940	1,244	94.6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45억 6,462만 8,420원으로, 이 중 2,964억 3,818만 8,503원을 집행(집행률 94.23%)하고, 38억 6,017만 7,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억 1,047만 722원임.

Ⅱ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
합 계	240,937,706,420	236,575,135,400	236,487,006,340	88,129,060	99.96
세 외 수 입	1,086,552,000	1,938,314,320	1,850,185,260	88,129,060	95.45
조정교부금	1,240,900,000	1,240,900,000	1,240,900,000	-	100
보 조 금	234,880,389,000	228,156,826,360	228,156,826,360	-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29,865,420	5,239,094,720	5,239,094,720	-	100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409억 3,770만 6,420원으로 이 중 2,365억 7,513만 5,4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364억 8,700만 6,340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6%를 수납한 것으로 나타남.
- 수납액 내역은 국고·시비 보조금 등이 2,281억 5,682만 6,360원 (96.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억 3,909만 4,720원(2.21%), 세외수입은 18억 5,018만 5,260원 (0.78%), 조정교부금 12억 4,090만원(0.52%) 순임.

-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2,914억원 대비 549억 1,781만 5,412원(△18.84%)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총 8,812만 9,060원으로, 미수납액 주요 내용은 사용료수입 391만 390원, 기타수입 3,118만 570원, 과태료 3,599만 2,200원, 부정이익환수금 1,704만 5,900원임.

[복지동행국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
합 계	240,937,706,420	236,575,135,400	236,487,006,340	88,129,060	99.96
복 지 정 책 과	11,569,950,000	12,191,231,260	12,173,985,360	17,245,900	99.85
장애인사회보장과	100,760,476,000	101,124,589,080	101,057,799,870	66,789,210	99.93
어르신동행과	122,734,242,500	117,022,562,870	117,019,148,920	3,413,950	99.99
가족행복지원과	5,873,037,920	6,236,752,190	6,236,072,190	680,000	99.98

2023년도 결산		292,190,969,820	291,492,950,812	291,425,360,102	67,590,710	99.97%
증감	금 액	△51,253,263,400	△54,917,815,412	△54,938,353,762	20,538,350	
	비율(%)	△17.54%	△18.84%	△18.85%	30.38%	

※ 세입예산액: 예산액+전년도 이월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39억 665만 2,420원이며, 2,958억 1,567만 9,687원이 지출되고, 38억 6,017만 7,2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1억 1,046만 9,478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4.23% 임. 전년도 집행률 94.9% 보다 0.67%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복지동행국에서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복지정책과로 전체예산 199억 4,398만 3천원 가운데 193억 7,374만 2,597원을 지출하여 97.14%의 집행률을 보였고,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부서는 어르신동행과로 전체예산 1,556억 4,006만 5,500원 가운데 1,436억 6,966만 7,224원을 지출하여 92.3%의 집행률을 보임.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총 계	313,906,652,420	295,815,679,687	3,860,177,200	4,120,326,055	10,110,469,478	94.23
복지정책과	19,943,983,000	19,373,742,597	-	139,669,880	430,570,523	97.14
장애인사회 보장과	125,593,952,000	120,934,827,171	265,469,000	2,844,029,100	1,549,626,729	96.29
어르신 동행과	155,640,065,500	143,669,667,224	3,450,360,000	904,431,985	7,615,606,291	92.3
가족행복 지원과	12,728,651,920	11,837,442,695	144,348,200	232,195,090	514,665,935	92.9
2023년도	383,438,385,820	363,895,358,421	6,125,911,500	9,284,037,078	4,133,078,821	94.9
증 감	금액	△69,531,733,400	△68,079,678,734	△2,265,734,300	△5,163,711,023	5,977,390,657
	비율%	△18.13%	△18.7%	△36.98%	△55.61%	144.62%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3 집행잔액(불용액)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3,139억 665만 2,420원의 3.22%인 101억 1,046만 9,478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1억 3,307만 8,821원보다 59억 7,739만 657원 증가함.
-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70억 1,180만 5,020원으로 비중이 가장 많고, ‘보조금 정산잔액’ 16억 2,037만 9,041원, ‘지출잔액’ 14억 891만 3,587원, ‘예산절감액(유보액)’ 4,677만 1천원, ‘낙찰차액’ 2,260만 830원 순으로 나타남.

[부서별 집행잔액(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집행잔액	원인별 잔액 현황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유보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합계	10,110,469,478	1,620,379,041	46,771,000	7,011,805,020	22,600,830	1,408,913,587
복지정책과	430,570,523	39,984,945	2,824,000	35,885,000	-	351,876,578
장애인사회 보장과	1,549,626,729	423,821,484	24,109,000	866,148,420	-	235,547,825
어르신 동행과	7,615,606,291	859,701,762	15,618,000	6,037,288,580	1,927,030	701,070,919
가족행복 지원과	514,665,935	296,870,850	4,220,000	72,483,020	20,673,800	120,418,265

4 집행률 저조사업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24건이며,

○ 사업 중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집행률 0%)은 6건으로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가칭)장애인복지타운 설치’, ‘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 ‘로봇활용어르신돌봄 사업’,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 임.

※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미포함)

[집행률 7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집행률 (㉮/㉮)
장 애 인 사 회 보 장 과 (7 건)	마 포 누 구 나 운 동 센 터 설 치	348,000,000	210,103,650	-	-	137,896,350	60.37%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	36,200,000	19,300,000	-	-	16,900,000	53.31%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64,922,000	-	-	17,000,000	47,922,000	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	157,696,000	34,101,760	-	123,594,240	-	21.62%
	(가칭)장애인 복지타운 설치	254,000,000	-	254,000,000	-	-	0
	인 력 운 영 비 (의료급여관리사)	166,956,000	110,552,910	-	19,654,240	36,748,850	66.22%
	기 본 경 비 (생활보장과)	113,461,000	75,757,472	-	-	37,703,528	66.76%
	마 포 고 령 친 화 도 시 조 성 사 업	57,612,000	35,435,200	22,000,000	-	176,800	61.5%
	효 도 밥 상 반 찬 공 장 조 성	1,048,000,000	-	1,048,000,000	-	-	0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집행률 (㉡/㉠)
어 르 신 동 행 과 (1 2 건)	로 봇 활 용 어 르 신 돌 봄 사 업	31,300,000	-	-	-	31,300,000	0
	경로당 냉·난방비, 양 곡 지 원	355,791,710	241,606,027	-	49,472,162	64,713,521	67.9%
	신수동 실뿌리복지 센 터 조 성	1,801,009,000	74,548,800	1,726,460,000	-	200	4.13%
	합 정 동 실 뿌 리 복 지 센 터 조 성	600,000,000	-	600,000,000	-	-	0
	노 인 이 동 목 욕 사 업 지 원	70,180,000	25,322,346	-	-	44,857,654	36.08%
	무 연 고 사 망 자 장 사 지 원	18,824,000	11,011,700	-	-	7,812,300	58.49%
	무 더 위 쉼 터 운 영 지 원	179,530,000	64,642,000	-	114,888,000	-	36%
	코 로 나 19 사 망 자 장 례 지 원	212,386,600	-	39,000,000	173,386,600	-	0
	주 거 시 설 지 원	100,000	3,000	-	-	97,000	3%
	중 증 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100,000	3,000	-	-	97,000	3%
가족행복 지 원 과 (5 건)	여 성 시 설 생 활 인 명 절 격 려	1,520,000	1,020,000	-	-	500,000	67.1%
	가 족 행 복 지 원 사 업	515,460,000	355,220,530	-	79,939,735	80,299,735	68.91%
	엄 마 아 빠 육 아 휴 직 장 려 지 원 사 업	245,400,000	46,800,000	-	99,300,000	99,300,000	19.07%
	안 전 한 청 소 년 시 설 조 성	237,655,920	66,933,920	144,348,200	-	26,373,800	28.16%
	기 본 경 비	78,411,000	51,786,830	-	-	26,624,170	66.04%

-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9건으로, 이 중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은 1건으로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설치’ 사업임.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며,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여야 함.

[집행잔액(불용액) 1억원 이상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장애인 사회보장과 (4 건)	주 거 급 여 지 원	23,992,767,000	22,698,381,230	-	1,138,920,464	155,465,306	94.6%
	마 포 누 구 나 운 동 센 터 설 치	348,000,000	210,103,650	-	-	137,896,350	60.37%
	장 애 인 활 동 지 원 급 여 시 · 구 추 가 사 업	4,064,525,000	3,442,521,000	-	-	622,004,000	84.69%
	장 애 인 종 합 복 지 관 운 영	2,456,114,000	2,269,491,682	3,500,000	64,537,895	118,584,423	92.4%
어 르 신 동 행 과 (4 건)	기 초 연 금 지급(지자체보조)	114,211,986,000	107,239,800,370	-	398,870,667	6,573,314,963	93.89%
	경 로 당 시 설 리 운 영 관 리	578,189,110	418,724,690	14,900,000	176,100	144,388,320	72.42%
	노 인 공 동 거 주 시 설 운 영	1,501,374,080	1,292,780,440	-	-	208,593,640	86.1%
	우 리 마 포 복 지 관 시 설 관 리 위 탁	949,453,000	830,806,468	-	-	118,646,532	87.5%
가족행복 지 원 과 (1 건)	서울형아이돌봄비 지 원 사 업	572,400,000	447,183,750	-	17,608,125	107,608,125	78.12%

○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p. 20)

-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2024회계연도에 복지동행국에서 추진한 사업 중 3개년 연속 집행을 80% 미달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부서명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장애인사회 보장과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61.9%	69.5%	66.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지원	63.7%	71.8%	79.6%
어르신동행과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47.1%	65.4%	72.4%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	69.6%	60.8%	67.9%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69.3%	59.2%	36.0%
	노인교실 운영지원	15.1%	69.3%	74.4%
	무연고사망자장사지원	59.5%	71.3%	58.5%
가족행복지원과	여성시설 생활인 명절 격려	62.5%	53.8%	67.1%

복지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연령별 분포, 복지 인프라(센터, 시설 등) 상황에 따라 집행 수요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수집과 분석이 부족하고, 기존 통계나 중앙정부 지침에 의존하여 사업 규모를 결정 하다보니 실질적인 지역 수요와 괴리가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지역 특성(고령화/소득수준/가구 형태 등)에 맞춘 정기적인 복지 수요 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사업 규모를 면밀히 파악 하여야 함.

수요 대비 공급이 과도하거나, 중앙정부 지침을 단순히 추종해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일지라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 바람.

Ⅲ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복지동행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급여기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세입,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동 조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가. 세입결산

- 예산현액: 6억 5,797만 6천원 중
징수결정액: 7억 9,710만 4,946원으로
실수납액: 7억 9,710만 4,946원임.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0%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다/나)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657,976,000	797,104,946	797,104,946	-	-	100%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 6억 5,797만 6천원 중
지출액: 6억 2,250만 8,816원
보조금반납액: 3,546만 5,940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94.6% 지출되었음. (집행잔액: 1,244원)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7,976,000	622,508,816	35,465,940	1,244	94.6
장애인사회보장과	657,976,000	622,508,816	35,465,940	1,244	94.6

IV

예산의 변경(이용 · 전용 · 이체)

1. **예산 이용** :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지동행국 ‘24년도 결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2. 예산 전용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26건, 2억 4,776만 5천원으로, 전년도 총 22건, 3억 1,031만 9천원에 비해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감소하였음.

[2024 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전 용 금 액	사유
총 26건			247,765,000	
복 정 책 과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468,000	실뿌리복지센터 특화사업 연계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 급량비 사용
		301-11 행사실비지원금	468,000	
	사회복지법인 · 시설 운영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000,000	종합사회복지관 간판 정비 관련 예산 전용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	
	사회복지법인 · 시설 운영 지원	307-06 보험금	△2,970,000	종합사회복지관 간판 정비 관련 예산 전용
		201-01 사무관리비	2,970,000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5,000,000	생활환경 개선(저장강박가구 청소비 등) 및 사후관리 사업(유품정리 특수청소비)의 수요 부족으로 생활행태 개선 사업(고독사 위험군 모니 터링 활동용품) 예산으로 전용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전 용 금 액	사유
장애인 사회보장과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6,30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	201-02 공공운영비	6,300,000	e그린우편 사용량 증가로 후납우편료 부족예산 확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시책사업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2,500,000	장애인식개선 영상 제작 용 역 시행을 위한 미집행 기타 보상금 예산 전용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2,000,000	우천 연기된 제2회 마포구 사람을 보라 축제 일정 변경 홍보물 추가 제작
	장애인 한마음축제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1,481,000	2024년 장애인연금 급여 지 급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 비 예산 부족분 확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481,000	
	장애인위문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3,560,000	2024년 장애인연금 급여 지 급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예산 부족분 확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 고보조재원)	3,560,000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4,519,000	2024년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예산 부족분 확보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4,519,000	
	염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82,000,000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예산 부족분 확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2,000,000	
	점자도서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1,320,000	마포장애인복지회관 정문 간판 보수 및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안내표지판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320,000	
	점자도서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2,443,000	마포장애인복지회관 정문 간판 보수 및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안내표지판 설 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443,000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18,000,000	공덕 신평리복지센터 로비 공간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18,000,000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전 용 금 액	사유
장애 사회 보 장 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2,060,000	신규 복지시설 개소에 따라 구민 편의를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60,000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8,300,000	(가칭)마포복지타운 설치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8,300,000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11,000,000	휠체어용 음파 운동기기 설 치 추진 관련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1,000,000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11,000,000	휠체어용 음파운동기기 설치 추진 관련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우리마포복지관 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1,000,000	
	행복동행하우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35,000,000	누구나 동행하우스 환경개 선 관련, 공간확장 공사 및 물품 구매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행복동행하우스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35,000,000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설치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2,000,000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 운 설치 관련 구조안전진 단 용역 예산 부족분 확보
	(가칭)장애인복지타운 설치	401-01 시설비	2,000,000	
어 로 동 행 신 과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3,000,000	경로의 달 맞이 '마포 효 콘 서트' 홍보비 예산확보
	노인복지 시책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비보조	△ 2,700,000	경로당 양곡 택배용역비 부 족에 따른 예산 전용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700,000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비보조	△ 13,500,000	경로당 양곡 택배 용역 추진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3,500,000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201-01 사무관리비	△ 300,000	노인복지시설 전문가(회계 사) 지도점검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0,000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전 용 금 액	사유
가 족 행 복 지 원 과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1,000,000	여성 분야 전문성 요구 사업 추진을 위한 마포여성동행 센터 위탁 관련 전용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000,000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24,344,000	여성 분야 전문성 요구 사업 추진을 위한 마포여성동행 센터 위탁 관련 전용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4,344,000	

3. 예산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222건, 이체금액은 1,613억 8,957만 5,720원임.

- 이는 2024. 2. 1. 자 행정기구 개편 및 2024. 4. 3.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업무 이관(가족행복지원과→교육정책과)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게 된 것임.

1 일반회계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 2024 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9건, 이월액은 30억 2,48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부서별 명시이월 결산 현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9건)		3,553,942,110	398,314,030	3,024,860,000	
장애인사회보장과 (2건)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4,500,000	11,000,000	3,500,000	서울시에서 연말에 계획을 수립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가칭)장애인복지타운 설치	시설비	254,000,000	-	232,000,000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설계용역비 명시이월
어르신동행과 (7건)					
효도밥상반찬공장 조성	시설비	811,000,000	-	811,000,000	특별조정교부금교부('24.9.)에 따라 유관기관(부서) 협의 등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공사 시행을 위한 입찰절차, 예산확보 등 제반 사항 준비로 수일이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효도밥상반찬공장 조성	감리비	16,000,000	-	16,000,000	특별조정교부금교부('24.9.)에 따라 유관기관(부서) 협의 등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공사 시행을 위한 입찰절차, 예산확보 등 제반 사항 준비로 수일이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	자산및물품 취득비	221,000,000	-	221,000,000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반찬공장 내부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주방기구 및 설비 등 구매일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436,433,110	312,765,230	14,900,000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신수동 실뿌리복지 센터 조성	시설비	1,760,621,000	73,682,000	1,686,939,000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 기간연장 등으로 지연, 이에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하는 건축·기계 공사와 동시추진이 필요한 전기,통신공사 계약이 당해년도 내 체결되기 어려운 여건으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전액을 명시이월
신수동 실뿌리복지 센터 조성	감리비	29,570,000	-	29,570,000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 기간연장 등으로 지연, 이에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하는 건축·기계 공사와 동시추진이 필요한 전기,통신공사 계약이 당해년도 내 체결되기 어려운 여건으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전액을 명시이월
신수동 실뿌리복 지센터 조성	시설부대비	10,818,000	866,800	9,951,000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 기간연장 등으로 지연, 이에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하는 건축·기계 공사와 동시추진이 필요한 전기,통신공사 계약이 당해년도 내 체결되기 어려운 여건으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전액을 명시이월

2 일반회계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6건, 8억 3,531만 7,200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부서별 사고이월 결산 현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6건)		1,332,657,600	61,363,200	835,317,200	
장애인사회보장과 (2건)					
장애인복지 시설운영	시설비	66,271,000	54,085,200	7,969,000	마포구 공공건축위원회 심의(2024. 12. 24.) 통과 후 건축기획 용역 준공 예정(2025. 1.)
(가칭)장애인 복지타운 설치	시설비	254,000,000	-	22,000,000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건 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 및 토지기반 조사 필 요함에 따라 용역 발주하 였으며,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2025. 1.)하여 사고이월
어르신동행과 (3건)					
마포 고령 친화도시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	22,000,000	-	22,000,000	연내 집행 불가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2025년 1월 말 완료)
합정동 실뿌리 복지센터 조성	시설비	600,000,000	-	600,000,000	구조(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추가 과업지시 로 일정 지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12,386,600	-	39,000,000	2025년 6월까지 계속 사 업으로, 2023년에 명시 이월한 예산을 시에서 집 행잔액 전액 반납 및 재 교부가 아닌 2025년 추가 소요액 조정금액만큼 재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통보
가족행복지원과 (1건)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시설비	178,000,000	7,278,000	144,348,200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누수방 지 공사 계약이 '24. 12. 16. 체결되었고, 기온이 5℃ 이 상일 때 실리콘 작업이 가능 하여, 공사 착공일이 '25. 4. 1. 예정으로 사업예산 일부를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VI

기금 결산

(단위 : 원)

구 분 기 금 명	'23년말 조 성 액 ㉠	2024년도 증감액			'24년말 조 성 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	5,917,498,220	△1,350,559,986	331,042,094	1,681,602,080	4,566,938,234
자활기금 [장애인사회보장과]	1,651,945,230	11,408,143	79,155,953	67,747,810	1,663,353,373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어르신동행과]	2,062,251,489	△1,402,925,868	147,530,372	1,550,456,240	659,325,621
양성평등기금 [가족행복지원과]	2,203,301,501	40,957,739	104,355,769	63,398,030	2,244,259,240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6억 5,194만 5,230원이며, 2024년에 7,915만 5,953원을 조성하고, 지역자활센터 사업비로 6,774만 7,81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16억 6,335만 3,373원이 조성되었음.
-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0억 6,225만 1,489원이며, 2024년에 1억 4,753만 372원을 조성하고, 15억 5,045만 6,2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6억 5,932만 5,621원이 조성되었음.
사용내역은 임시거소 관리 및 운영비 지출, 마포청년하우스 공사에 따른 시설비 지급 및 물품 구매 등임.
-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2억 330만 1,501원이며, 2024년에 1억 435만 5,769원을 조성하고, 6,339만 8,03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22억 4,425만 9,240원이 조성되었음.
사용내역은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양성평등 공모사업, 여성친화시설 설치 등임.

○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p. 26)

- 기금 사용 활성화 방안 강구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천 원)

자활기금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	수입계획 현액	1,735,662	1,696,802	1,718,590
	징수결정액	1,754,032	1,730,230	1,731,101
	예치금회수	1,709,636	1,686,767	1,651,945
지출	지출계획 현액	1,735,662	1,696,802	1,718,590
	지출액	1,754,032	1,730,230	1,731,101
	여유자금 예치	1,643,578	1,600,324	1,663,353
	예치금 외 지출	110,454	129,906	67,748

(단위: 천 원)

양성평등기금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	수입계획 현액	2,202,334	2,195,002	2,214,678
	징수결정액	2,192,080	2,237,743	2,307,657
	예치금회수	2,160,001	2,157,677	2,203,302
지출	지출계획 현액	2,202,334	2,195,002	2,214,678
	지출액	2,192,080	2,237,743	2,307,657
	여유자금 예치	2,157,677	2,203,302	2,244,259
	예치금 외 지출	34,403	34,441	63,398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해진 특정한 목적으로 조성되는데, 실제로 기금이 목적사업에 쓰인 비율은 극히 낮아 보임. 지역 현안 해결이나 주민 복지 향상 등 조성 목적에 따라 사용할 재원이 사실상 예치금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음.

기금 운용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적시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기회비용이 큼.

▷ 개선 및 권고사항

기금 조성 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시 제정된 조례와 내부지침 등을 검토해, 기금운용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주민 복지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 목적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VII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총 2건으로, 8,773만 9천원을 지출결정하고, 8,772만 9,27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730원임.

[부서별 예비비 사용내역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결정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조직	세부 사업						
총 계		87,739,000	87,729,270	0	9,730		
일반예비비 합계(2건)		87,739,000	87,729,270	0	9,730		
복지 정책과	긴급복지지원	17,739,000	17,729,270		9,730	2024-10-23	긴급복지지원 예산 부족으로 국시비 추가지원 및 구비 추가집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70,000,000	70,000,000			-2024-07-03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공사 손해배상 소송 조정 확정 금액 지급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하여 보면,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409억 3,770만 6,420원으로 징수결정액 2,365억 7,513만 5,400원 대비 2,364억 8,700만 6,340원을 수납하여 99.96% 수납률을 보이고 있음.
- 복지동행국의 경우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43억 6,257만 1,020원 차이가 발생함.
 -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원별로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세입을 줄이거나 빠트리지 않도록 편성 해야함. 또한 세입전망시 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함.
 - 특히 세외수입 경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8억 5,176만 2,320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액을 아예 미편성한 채 징수·수납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세수 추계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입 미수납액은 8,812만 9,060원으로 납세태만 및 납기미도래, 기타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되는 사유에 대한 원인 조사 및 개별사례에 대한 처리방안 수립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시효소멸 전에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139억 665만 2,420원 대비 94.2%인 2,958억 1,567만 9,687원을 집행하고, 1.2%인 38억 6,017만 7,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3%인 41억 2,032만 6,055원은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101억 1,046만 9,478원임.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편성예산의 집행률은 94.23%으로,

-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장애인사회보장과 7건, 어르신동행과 12건, 가족행복지원과 5건, 총 24건임.
- 그 중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6건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 2건 [①중증장애인야간순회방문서비스 ②(가칭) 장애인 복지타운 설치], 어르신동행과 4건 [①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 ②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 ③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④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임.
-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 보다 세밀한 검토로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불용처리함으로써 결국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못하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보조금반납금 제외)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2.1%, 장애인사회보장과 1.4%, 어르신동행과 7.1%, 가족행복지원과 5.2%로,
 -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발생원인의 체계적 분석과 소요예산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등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편성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및 추경 시 적절한 감액 등 소요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변경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신축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 2024년도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예산변경 현황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26건, 2억 4,776만 5천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체된 건은 297건임.
 - 이용, 전용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일부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구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시 사업 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 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가급적 그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이월액** 건수와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6건, 총 15건으로,
 -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 주요 내역은 장애인사회보장과 ‘(가칭)장애인복지타운설치’ 시설비 2억 3,200만원, 어르신동행과 ‘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 시설비 8억 1,100만원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100만원,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시설비 16억 8,693만 9천원임.
 - 사고이월 주요 내역은 어르신동행과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시설비 6억원, 가족행복지원과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시설비 1억 4,434만 8,200원임.
- 보조금 교부 지연 등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은 확보하였지만 행정 절차 등의 지연으로 부진한 사업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이월’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조 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관리되나, 과도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재정 통제를 크게 저해할 것인 바, 이월금의 추이를 비교하여 반복적인 이월이나 집행이 어려 움에도 예산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2024회계연도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장애인사회보장과),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어르신동행과), 양성평등기금(가족행복지원과) 총 3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9억 1,749만 8,22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6,693만 8,234원임.

○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 예비비는 복지정책과 사업 총 2건, 8,772만 9,27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 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예산 부족으로 국시비 추가지원 및 구비 추가집행을 위해 1,772만 9,27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관련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공사 손해배상 소송 조정확정 금액 지급을 위해 7천만원을 지출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외의 예산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집행부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 사용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측 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기적절성을 적극 검토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